

2003년 농업종합자금 지원계획

농림부

2002년말 현재 지원실적 1조원을 돌파하면서 농업종합자금이 전업농 중심의 대표적인 농업정책 자금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지원분야 확대로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3년 농업종합자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사항을 살펴본다.

■ 올해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는?

- 2003년 농업종합자금 지원계획은 연간 5,400억원이다(본체공급가격 3천만원 이상 농기계구입자금 포함).

■ 지원대상자는?

-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이다.
- 이밖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로 사업중인 원예특작·축산분야의 유통·가공·저장사업(RPC 제외)에 종사하는 자와 관광농원사업자, 선진작목반, 본체가격 3천만원 이상 농기계구입자금 등도 대상이 된다.
- 단, 상기 지원대상자라도 대출심사를 통하여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농업종합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제한대상자는?

- 대출대상사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조합원이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등은 대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지원조건은?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원금균분 상환 단, 유리온실과 축산시설, 관광농원(농촌민박)의 경우는 5년거치 10년원금균분 상환
 - 개보수자금 : 2년거치 3년원금균분 상환
 - 운영자금 : 2년이내 일시상환 단, 인삼은 연근별로 3~5년이내 일시상환

- 농기계자금 : 1년거치 4~7년원금균분 상환

- 대출금리 : 연 4%
- 대출한도 :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자금 이내

■ 대출신청 방법은?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회원조합이나 중앙회 시군지부(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회원조합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로 선정되지 않으면 농업종합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대출신청 전 농업종합자금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농업종합자금 대출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대출가능여부 결정은?

- 지원대상자일지라도 대출신청서 접수 후 대출사무소에서 대출심사(소요자금, 채권보전 심사 등)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대출심사결과는 대출신청인에게 통보된다.

■ 2003년 주요 변경사항은?

- 대출분야가 확대되었다.
 - 금년부터는 관광농원 및 농촌민박 시설자금과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중 본체 공급가격(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집」)이 3천만원 이상인 농기계 구입자금은 농업종합자금으로 대출된다.
 - 또한 농촌의 유휴시설물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농업시설물(농업정책자금이 지원된 농업시설물은 제외)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도 농업종합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 과수원 조성에 대한 대출규제가 해제되었다.

- 2002년 5월에 양돈·양계분야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해제되었으며, 금년부터는 과수원 조성에 대한 대출규제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한·칠레FTA 체결과 외국산 과일의 수입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차입금을 이용한 대규모 신규 과수원 조성이나 확장은 여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대출취급 지역농협이 대폭 늘어났다.

-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3천만원 이상 농기계구입자금이 농업종합자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종합자금을 취급하는 지역농협이 2002년 307개 조합에서 2003년 620여개 조합으로 대폭 늘어나 농업인의 농업종합자금대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 5천만원이상 대출신청시 농업인의 회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다.

-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체의 경영기록을 유도하기 위해 강화된 정부지침에 따라 농업종합자금 5천만원이상 대출보유(금차 대출신청액 합산)경영체는 회계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개인 농업인으로서 단식(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자료 또는 3개월 이상의 농업경영 회계기록(현금출납장, 경영장부, 영농일지 등) 사본을 제출한 경우와 대출신청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이 의무화된 모든 법인, 금융기관 부채 3억원이상(금차 신청액 포함) 개인 농업인은 회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 주요 회계교육 실시기관은 농업기술센타(각 시군 소재), 농림수산정보센타(수원 소

재), 농업연수부(수원 소재) 등이다.

- 회계교육의 범위는 회계프로그램 교육, 경영장부 작성 교육 등 회계에 관한 교육이수 실적을 인정하며, 농협 대출취급사무소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해당교육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 1억원이상 대출농업인은 매년 회계기록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 농업종합자금 대출이 1억원이상(대출신청액 포함)인 농업인(법인 포함)은 대출후 1년마다 농업경영 회계기록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 해당 농업인의 경우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초 대출기한에 불구하고 회계기록 미제출일 다음날짜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출약정 체결시 추가약정서를 체결하며, 회계기록 제출 기일은 대출신청인이 정한다.

○ 금년 2월부터는 새로운 대출심사제도가 적용된다.

- 금년 2월 3일부터 농협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채소, 화훼, 벼섯, 양돈, 한우 등 16개분야로 세분화된 비재무 평가위주의 신 심사제도를 개발 적용한다. 새로운 제도에 의할 경우 경영주 자질, 경영관리능력, 기술수준의 평가 비중이 높아지며 재무부문은 부채부문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이 우수하고 재무건전성을 갖춘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에 의할 경우 각종 경영기록 사본을 제출하면 대출심사시 좋은 평점을 받는데 유리하다. ◉

